

第43回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20日(火) 10時10分 開議

## 議事日程(第4次 本會議)

1. '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 附議된案件

1. '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2. '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鍾路區廳長 提出) ..... 1面
3. '95年度歲入歲出豫算(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10時10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동료議員 여러분께서 그동안 '93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예비비 승인 건은 물론이고 또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그리고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전원이 참석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까지 오로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본議長은 이 자리로나마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95년도를 맞이하는 준비체제에 회기를 맞이해서 좀더 심도있고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2名 중 出席議員 1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鍾路區廳長 提出)
2. '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鍾路區廳長 提出)

## 3. '95年度歲入歲出豫算(案)(鍾路區廳長 提出)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憲九 委員長!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憲九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李憲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1993년도 결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본 의원이 맡아 심사하고,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44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부문 10억6,600만원이 수납되어 총 55억5,300만원으로 7.1%가 초

과 증액되어 예산액보다 6%가 증가된 837억7,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1억1,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7억2,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8.8%이었습니다.

잔여액 190억4,6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고이월 31억4,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158억3,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196억9,600만원 중 행정재산은 1,160억6,1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36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물품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보유 현황은 1,239점에 53억3,600만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우리 의회의 결산감사위원 세 분들께서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은 이미 집행기관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보아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총 7억6,805만원으로 창신동 23번지 818호 위험절개지 공사 및 용역에 1억4,400만원, 시설관리 공공요금에 4,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5억7,3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3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역시 '93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예산으로서 불가피하게 집행되었던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안대

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 의결 요구된 예산 규모는 총 1,032억4,200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0.6%가 증가하고 최종 예산보다는 1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11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 121억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723억800만원, 의존수입 187억9,4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 비율이 20.6%로서 '94년도보다 1.7%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상당부문 시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부조자 의료비 6억6,900만원과 기타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 총 6억7,4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억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기타 수입 1,2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편성,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3억100만원인데 이는 주정차 과태료수입 43억7,5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점용료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 건립 및 부지매입 적립금 60억원과 주차관계 시설비 8억9,800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수행비 및 예비비로 12억8,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위원회별로 감액 또는 증액한 부문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겸하여 수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한 과목 중 일반회계에서 49개 과목

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총 21억 1,106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개 과목 역시 일부 삭감하여 총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예산액 전액을 주로 복지사업비 내지는 건설사업비에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액을 적립금 및 보상금에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승인요구액 1,032억4,200만원에 대하여는 가감없이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결산(안) 審査報告書

1994. 12. 1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4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위원회(1994. 12.14)상정·의결

## 2. 提案説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1993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결산 총괄

－당초예산액 747억3,300만원

－세입예산액 782억2,200만원에 수납은 837억7,500만원(107.1%)

－세출예산액 821억1,400만원에 647억 2,900만원 지출(78.8%)

－집행잔액은 190억4,600만원에 사고이월액 31억4,600만원과 보조금 6,400만원을 제외한 순세제잉여금이 158억3,600만원임

○회계별 구분

－일반회계

· 당초예산 747억3,300만원에 44억 8,700만원의 수납으로 총세입액은 792억2,000만원

· 예산현액은 786억2,500만원 중 632억4,200만원을 집행

· 세입총액 대비 집행잔액은 159억 7,800만원임.

·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31억4,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제잉여금은 127억7,400만원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9억9,900만원에 수납은 9억6,500만원(95.6%)

· 세출예산액 9억9,900만원에 9억 5,900만원 지출

· 차입잔액 6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반납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억1,200만원에 수납은 1억3,200만원(117.8%)

· 세출예산액 1억1,200만원에 1억 1,200만원 지출

· 차입잔액 2,000만원은 전액 1994년도로 이월조치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3억7,800만원에 수납은 34억5,800만원(145.4%)

· 세출예산액 23억7,800만원에 4억 1,600만원 지출

· 차입잔액 30억4,200만원은 전액 1994년도로 이월조치

## 3. 質疑 및 答辯 要旨: 없음

## 4. 討論要旨(토론자: 박우신위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 5. 修正案의 要旨: 없음

##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  
(참 조)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예비비지출승인(안)  
審査報告書

1994. 12. 1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4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위원회(1994.  
12.14)상정·의결

가.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사 업 명             | 예 산 액   | 집 행 액   | 잔 액     | 과목 및 일자                 |
|-------------------|---------|---------|---------|-------------------------|
| 계                 | 768,050 | 194,259 | 573,791 |                         |
| 창신동 23-818위험절개지공사 |         | 129,000 |         | 시설비 '93.5.14            |
| " 부대정비            |         | 18,790  |         | 시설부대비 "                 |
| 기 본 경 상 비         |         | 46,469  |         | 공공요금 '93.12.6<br>(전기요금) |

나.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예비비는 판공비 및 정보비와 보조금(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적법 타당한 집행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 음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나. 주요골자

- 예비비지출 승인액: 일반회계 2건 1억 9,425만9,000원  
- 창신동 23번지 주변 위험절개지 보강공사비 1억4,779만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용 공공요금 부족분 4,646만9,000원  
○예비비 승인액 집행: 1억9,425만9,000원 지출, 5억7,379만1,000원 불용처리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장소수)

5. 討論要旨(토론자: 김현중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修正案의 要旨: 없 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

(참 조)

199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예산(안)  
審査報告書

1994. 12. 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4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위원회(1994.12.14) 상정·제안설명

제3차위원회(1994.12.15) 질의 답변

제4차위원회(1994.12.16) 토론,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1995년도 규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예산편성 기본방향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비, 공공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를 중점  
반영-연례적인 행사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인건비등 기본경비는 과거 집행실적  
으로 실소요액만 산출-경상적경비는 점증식 예산편성을 지  
양하고 영기준 방법으로 편성

## ○예산규모

총 1032억4,200만원(94년 당초예산 대  
비 20.6% 증가, 최종예산 대비 11.9  
% 증가)[일반회계 911억200만원  
특별회계 121억4,000만원]

##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세입예산 :

자체수입 723억8,000만원(79.4%)

의존수입 187억9,400만원(20.6%)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행정비 457억500만원(50.1%)

사회복지비 251억1,100만원(27.6%)

지역개발비 166억4,000만원(18.3%)

기타경비 36억7,400만원(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74백만원(의료  
부조자 의료비보조, 기타 경비)-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억6,500  
만원(저소득주민의 지원용자금)

-주차장특별회계 113억100만원

세입 :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43  
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4,900만원

기타 수입 5억7,700만원

세출 : 주차장시설 토지매입비 60억원

적립금 31억2,000만원

주차관계 시설비 8억9,800만원

일반운영비 9억7,300만원

예비비등 기타경비 3억1,000  
만원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윤주채, 장소수)

## ■총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95예산액  | '94예산액 | 증 감    |        | 구 성 비 |
|-------------|---------|--------|--------|--------|-------|
|             |         |        | 금 액    | %      |       |
| 합 계         | 103,242 | 92,260 | 10,982 | 11.9%증 | 100%  |
| 일 반 회 계     | 91,102  | 84,627 | 6,475  | 7.7%증  | 88.2% |
| 특 별 회 계     | 12,140  | 7,633  | 4,507  | 59%증   | 11.8% |
| 의 료 보 호 기 금 | 674     | 1,066  | - 392  | 36%감   |       |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 165     | 158    | 7      | 4%증    |       |
| 주 차 장       | 11,301  | 6,409  | 4,892  | 76%증   |       |

## ①세입재원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년 도 별          | 계                | 자체수입              | 의 존 수 입           |        |       |       |
|----------------|------------------|-------------------|-------------------|--------|-------|-------|
|                |                  |                   | 소 계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보 조 금 |
| '95년도<br>(구성비) | 91,102<br>(100%) | 72,308<br>(79.4%) | 18,794<br>(20.6%) | 13,732 | 2,500 | 2,562 |
| '94년도<br>(구성비) | 78,975<br>(100%) | 61,341<br>(77.7%) | 17,634<br>(22.3%) | 13,883 | 2,180 | 1,571 |
| 증 감            | 12,127           | 10,967            | 1,160             | -151   | 320   | 991   |

##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포괄 예산적 교부금  
 특별교부금: 개별목적에 위한 교부금  
 (구민회관 건립, 성대입구 도로확장)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병사  
 시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계      | 의료보호기금 |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       |     | 주 차 장 |       |     |
|--------|--------|-------|-----------|-------|-----|-------|-------|-----|
|        | 시비보조금  | 옹자회수등 | 옹자회수      | 전 입 금 | 기 타 | 과 태 료 | 영 여 금 | 기 타 |
| 12,140 | 668    | 6     | 103       | 50    | 12  | 4,375 | 6,349 | 577 |

## ②세출내용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년 도 별          | 합 계              | 경 상 비             | 투 자 사 업 비         |
|----------------|------------------|-------------------|-------------------|
| '95년도<br>(구성비) | 91,102<br>(100%) | 70,842<br>(77.8%) | 20,260<br>(22.2%) |
| '94년도<br>(구성비) | 78,975<br>(100%) | 59,269<br>(75%)   | 19,706<br>(25%)   |
| 증 감            | 12,127           | 11,573            | 554               |

##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계      | 의료보호기금 |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 주 차 장 |       |     |       |
|--------|--------|-------|-----------|-------|-------|-----|-------|
|        | 시비보조금  | 옹자회수등 | 일 반 용 자 금 | 적립금   | 토지매입비 | 시설비 | 예비비기타 |
| 12,140 | 669    | 5     | 165       | 3,120 | 6,000 | 898 | 1,283 |

## ■ 검토의견

## 가.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규모가 작년 최종 대비 11.9%가 늘어난 팽창예산으로서 구민 1인당 세 부담액이 33만원임(작년 28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을 계상하였는 바 작년 계상 잉여금 72억원보다는 50억을 더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전망 등에 대한 검토
-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전제로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작년(13억원)보다 약 24억원이 증가된 37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수 추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됨
- 도로 및 하천점용료의 시세 징수교부금을 작년 76억원에서 60억원으로 16억원을 감소 계상하였는 바 그 원인과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사업소세 세입 계상에 있어 세수목표에 대한 징수율을 100% 예상 계상하였는 바 세입 추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및 종로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구 금고를 시중은행에 개설 구 세입 현재액을 예치하고 있는 바 그 예치방법 및 운용의 적정 여부와 재무회계규칙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 (세 출)

-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비와 투자사업비 간의 구성비가 작년(75:25)보다 더 악화되어(78:22) 복지예산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경상비 증가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각 부서로 계상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집행 성격과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동 행정지도·특수활동비·동 행정지원 및 역점사업추진 9,000만원
  - 동 행정지도·특수활동비·대시민 행사 및 구민화합추진 5,000만원

- 기획예산운영·특수활동비·구정주요업무추진 2,550만원
- 기획예산운영·특수활동비·생활개혁업무추진 5,000만원
- 서무관리·업무추진비·구정주요업무추진 2,000만원
- 서무관리·업무추진비·전경위문 등 1,200만원
- 서무관리·업무추진비·유관기관 업무추진 2,000만원
- 국민운동관리·특수활동비·자연보존활동비 1,000만원
- 국민운동관리·특수활동비·각종 행사추진비 1,000만원
- 국민운동관리·특수활동비·시민의식개혁운동활동비 3,000만원
- 국민운동관리·업무추진비·국민운동관리지원 500만원

○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및 업무추진 임차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 보유한 대형버스 1대, 소형버스 2대로 대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

○ 자산취득비 예산이 11개 세항에서 총 13억을(정수물품 6억2천만원, 비정수물품 6억8천만원) 계상하였는 바 종로구물품관리조례 관계규정에 의해 내구년한 등을 검토한 사전 심사를 통한 계상인지 여부와 필수불가결한 물품 구입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투자사업은 '94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비교한 바 도로분야 27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일치될 뿐이고 전기분야 5개 사업 중 2개 사업, 공원분야 9개 사업 중 2개 사업, 녹지분야 8개 사업 전부가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음은 엄격한 투자 심사와정이 결여된 것인지 사유 규명이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도로분야) 4건에 대한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과도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녹지관리 일반운영비(p237) 중 관내 녹지대 관리와 도심 자연심기의 타당성 여부, 시설비 11개 사업의 산출근거가 애매하며 특히 주요지역 조정

및 유지관리비(p239) 3억원은 사업내용과 자체예산 사용의 문제점 여부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제도나 방침의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부사항이(이웃돕기안내문 등) 불용될 소지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나. 특별회계

##### 〈세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시비보조금의 감소와 융자 회수수입의 감소로 전체 기금이 약 3억 감소한 바 과년도 미회수금 3,440만원의 강력한 회수 대책이 요망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은 총 1억6,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만원을 계상한 바 기금운영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이입 조치가 되도록 부실 운영한 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됨.

-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이 전체적으로 43.2% 증가 계상한 바 세입 추계의 적정 여부와 특히 잡수입 중 견인료 수입 역시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한 추계인지 여부와 이자수입도 장기예치가 예상되는 바 예금방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세출〉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일반회계 보건행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편성된 사유에 대한 검토

-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주차장 부지의 이용도 및 위치, 구매가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주차단속관리 일반운영비(p405) 중 급량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중식비와 (p406)교통비, 포상금, 불법주정차 단속 보상금 등은 단속공무원의 급여성 수당의 성격인 것으로 보이나 이중성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업무추진비(p406) 중 교통질서확립 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4. 質疑 및 答辯 要旨

##### 가. 세입

- 질의자 : 나재암위원, 박우신위원, 박권선위원, 임와룡위원

- 답변자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건설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문) 면허세 90%, 사업소세 100% 징수하겠다는데 가능한가?

답) 면허세는 과거 86~88%쯤 되는데 '95년도에는 90%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소세는 자진납부 사항이므로 가능함.

문) 일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세입 산출한 경우는?

답) 각종 점용료는 '94년 실적을 계산하였으며, 부당이득금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적을 계산한 것임

문) '94년과 '95년 세입 차이(11.5% 인상) 이유는?

답) '95년 토지등금 상승분, 재산세 과표인상,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대금 등 포함 추계임.

문) 계속 도로점용사용료 중 한진, 통신, 도시가스 비용산출 방법은?

답) 20m미만 사용료 수입이 1/5정도 되며, 나머지는 4/5는 시수입이 됨. 비용산출은 '94년 실적을 계산하였음.

문) 투자사업심의회에서 10억이상 심의 중 자립도 79%에 대한 향상방안 및 증액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답) 구정발전 용역비로 1억을 책정 심도있게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나. 세출

- 질의자 : 박우신위원, 임와룡위원, 홍승태위원, 박권선위원, 박종식위원, 김현중위원, 나재암위원

- 답변자 : 총무국장, 재무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문)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2,500만원 중 구청 대형버스를 이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답) 근거리는 우리 차량을 이용하며 큰행사 및 외부행사시 임차료임.

문)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27개 중 3,4개가 변경되는데 그 이유는?

답) 계획수립 시행 중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 부득이하게 수정된 것임.

문) 창신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산정이 잘 된 것인가?

답)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놀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바람.

문) 도심자연심기 예산은 무엇인가?

답) 어린세대를 위하여 농촌을 도시로 옮기는 사업임.

문) 구청사 누전설비 개량공사 1억원 예산의 용도는?

답)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보수토록 하는 예산임.

문) 특수활동비 5억 내역은?

답) 각종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예산임.

문) 동네-기업 결연사업 1개 동 50만원 배정 이유는?

답) 각 동별 기업체와 함께 각종 행사토록 하는 예산임.

문) 해외여비 차등 책정 여부는?

답) 동남아권, 상급기관 직접 실시, 교환방문 등 분야별로 편성한 것임.

문) 청사 커텐 제작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데, 세탁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답) 커텐 노후정도를 파악, 교체부분을 산정하였음.

문) 직원휴양소 설치운영비 운영 방법은?

답) 각 구 공히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정산하고 있음.

문) 주차타워 보수비, 제1별관 보수비 산정 이유는?

답) 주차타워 보수비는 용역 산출하였으며, 제1별관 보수비는 용도변경

으로 외부 임차비용을 산정하였음.

문) 일반운영비 2억 이상 증가 요인은?

답) 공공요금, 급량비 상승 및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임.

문) 소송배당금 5천만원 배정 이유는?

답)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94년에도 예산이 없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문) 서울시민 체육대회 응원단 운영비 8천만원 책정 이유는?

답) 각 구 체육행사로 각종 입장식, 기타 부대비용 포함된 금액임.

문) '94년 청소비 예산이 117억원인데 '95년에 137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답) '95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 18억과 자연증가분 포함된 예산임.

문)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5천만원은 무엇인가?

답) 관내 통, 반장 70% 배부 금액이며,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가격이 2,000원인데 각 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답) 당초 플라스틱협동조합 단가계약 하도록 되었으나, 우리 구는 공개입찰을 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5. 討論要旨

○일반회계: 박우신위원의 동의안 채택

-세입부문: 원안 가결

-세출부문: 삭감, 수정가결

※삭감한 전액을 일반운영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

○주차장 특별회계: 심재득위원의 동의안 채택

-세입부문: 원안 가결

-세출부문: 수정

※삭감한 전액을 적립금, 보상금으로 증액

## 6. 修正案의 要旨

○일반회계 세출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2,000만원 등

21억1,106만원 삭감

○특별회계 선출

—지역교통관리 일반운영비 829만원 등  
2,749만원 삭감

#### 7. 審査結果

○일반회계: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원안 가결
-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원안 가결
- 주차장 특별회계—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없 음

○議長 李斗鶴 李憲九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3  
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委員長!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羅在岩議員 羅在岩議員입니다.

연일 예결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예산  
을 다루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생활체  
육 보상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당초 예산  
액 1,920만원 감액 1,200만원, 수정 예산액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  
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혹  
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왕  
보조를 해주셨습니까마는 일체 한 푼도 지  
원없이 운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들에  
게 부탁을 드립니다.

○議長 李斗鶴 기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羅在岩議員이 토론시간에 발언한 건에 대해  
서는 '95년도 예산(안) 승인 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  
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  
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맞이하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연일 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하  
서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과감히 삭감을 해가지고 해냈는데 본 議員  
이 나와 가지고 질의하게 된 것은 특별위  
원님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으로 해서는 지역신문 구독료 2,001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지역신문을 안  
아끼고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의회에서 하  
고 있는 것을 낱알이 지역주민 통반장 이  
런 분들한테 오히려 서울신문이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  
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 우리 특별위원  
장한테,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2,001만6,000  
원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일

례를 들어서 전부 예산이 항목별로 편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좀 자구수정이라도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사전에 나와서 한다는 것보다 서울신문 1억5,000만원 예산을 줄여서라도 거기에서 약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라도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의 날날이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신문을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위원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議長의 조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玄孝善입니다.

우리 金成贊議員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중복된 내용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신문이 말이죠. 과거에 정부에서 키워준, 몇년 전부터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통반장들한테 꼭 서울신문을 줘야 된다는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차라리 돈을 현금으로 줘서 통반장들이 어느 신문을 보든 보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서울신문만 특혜를 1개 구청에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전국을 따져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한데 서울신문만 지칭을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잘라서 물론 지역신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지역신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단 1,000만원이라도 배려를 해주고 서울신문 1억5,000만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지고 승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현찰로 통반장들한테 줘서 조선일보를 보든 동아일보를 보든 서울신문을 보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느 일간지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

상을 문민정부에서 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玄孝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 질의가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議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永泰議員 마지막 예산을 하시느라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金成贊議員님하고 玄孝善議員님이 강조하신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신문에 대한 육성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이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그 자체의 내용을 기자가 각 동별로 議員 한 사람 한사람 또 구청장 및 각 관계공무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심층취재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지역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지역신문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지금까지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이 처음 창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운영의 미숙도 있었습니다. 議員들이 해외에 나가서 중요한 시찰을 하고 견문을 익히는데 그것이 해외 놀러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화시키는 어떤 잘못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 번 세미나 받고 이론적으로 교육 받아봤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선진국에 나가서 우리가 산업현장 그들의 정치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서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모아서 의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곧 해외 산업시찰이었는데 그런 것을 꼬집고 한 것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나 빈대새끼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지르고 절에 불지른다고 되는 것은 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당 때 국가신문을 쪽 문민시대에까지 이끌어오면서 그것을 강제로 강매하는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떻게 문민시대라고 신한국 창조라고 공무원 여러분이 국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면 전부 사직서 내세요. 그 썩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줄기차게 본 議員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삭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당 홍보지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천만 국민이 구독하지도 않고 시내 판매대에 서울신문 판매하는 데 봤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국민 거울이요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신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살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1억3,000이나 2,000, 1억이나 이렇게 해서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이 곧 우리 주민을 홍보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중첩되는 질의는 잘 아시지만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 들어갈 때 새롭게 질의하면 혼합되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결위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憲九 질의해 주신 동료 議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증감된 부분을 먼저 심도있게 심사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추후에 심사하는 그런 순서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金成贊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문제도 다루었고 또 田永泰 議員님께서 한 서울신문 편중에 대한 것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의 분포현황을 보면 시민행정위원 11명 중에서 다섯

분이 와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의 9명 중에서 네 분이 와계십니다. 저는 이 뜨거운 감자를 될 수 있으면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것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어느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朴禹信 議員님께서 언론의 지역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언론의 활성화에 대해서 아쉬운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질의하신 議員님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417명에 2,000원씩 해서 지역신문에 2,001만6,000원 배정된 것이 삭감되었고 또 반대로 서울신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던 데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서도 이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田永泰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편중 배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역신문에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동감합니다마는 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더이상 본 위원장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羅在岩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협의회의 당초 예산은 1,9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 1,200만원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뭔가 부족했는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고 그래서 절충해서 처음에 6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운영비로 월 60만원씩 해서 최종 720만원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羅 議員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고 전액 삭감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본 議員의 입장에서 더이상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예산결산 委員長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議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田永泰議員 豫算決算 委員長이신 李憲九議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기한 대로 본 예산편성이 본회의에 와서 잘못된 것을 최종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 와서 토론하고 있는데 서울신문 1억5,000만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이것을 잘못을 동감한다고 시인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심사숙고해서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건 시민행정위원회건 그것은 여과하고 여과하고 최종 여과하는 데가 어디냐, 이 본회의장 아닙니까? 전체 22명의 議員이 모여서 그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그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미비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시정의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豫決委員長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22명의 議員이 다 모여서 심도있게 토론하는 질의자나 답변하는 결산 委員長의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는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초의회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같이 출발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신문에서 삭감해서 종로신문에 지방지에 예산편성을 다시 삽입해서 구민의 거울이 되고 구민의 귀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견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議長 李斗鶴 豫算決算 委員長! 나와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憲九 지금 田永泰議員께서 일부는 질의이지만 거의 전체가 토론인 것 같습니다. 田永泰議員님께서 말

씀하신 것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입장과 동조한다는 얘기를 했지, 그 심의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과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에 있어서의 서울신문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심의되었음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그만 토론하죠.)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委員長이 나오셔서 하나.)

○議長 李斗鶴 예. 金成贊議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이 자리에 다시 안 서려고 했는데 우리 特別委員長님께서 답변이 방금 田永泰議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 수정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보고로 끝내야 합니다. 질의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질의가 소용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이 안되고 이것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전에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존중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했다고 할 때는 그 예결위원은 있으나마나 한 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전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드리면 이런 지탄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미지근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물론 민주주의니까 다수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委員長 의견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斗鶴 거기에 대해서 豫決委員長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田永泰議員께서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수정안은 질의시간에 논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시간에 논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니까 金成贊議員께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金成贊議員은 어쨌서 나왔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했다고 했길래 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특별위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議長 李斗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議員! 토론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예산심의니까 진지하게 오손도손하게 잘 합시다.

○金憲中議員 金憲中議員입니다. 연일 정말 약 한 달 가량을 감사에 연해서 예산심의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議員님들 말씀도 잘 하시고 이러면 이리 돌아가고 저러면 저리 돌아가는 교묘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1월 24일날 지역신문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10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그것이 남의 일이나, 4년 가까이 지역신문, 모신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허위보도를 일삼았고 아까 누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수습차 좋지 않은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구청의 국·과장 또는 심지어 동장들이 직무유기라는 이러한 신문까지 내 가면서 괴롭혔습니다. 또는 저는 30만원을 준 사람이고 지난번 분명히 판결문을 떼어와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30만원 돈 달라고 하는데 안줬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신문을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2차에 걸쳐서 30만원을 줬는데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1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주지 못하고 해서 그 다음 달부터 12번씩이나 이 신문으로부터 것뺄함을 당했고 심지어는 재개발에 호수가 바꿨다 또는 재개발이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되었다 또는 2지구 준공하는 데 대해서 준공을 1지구 조합장 金憲中議員이 방해를 했다. 전부 그 신문을 보관하고 있어요. 또 중재위원회에 가서 두 번씩이나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문까지 냈고 정정보도까지 냈습니다. 누구 하나 불러다 놓고 잘못했다 시정을 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앞으로 약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신문이 종로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신문만 편견해서 2,000만원을 그 쪽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편견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이런 말을 議員들끼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안들어왔다고 해서 자기가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모른척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재산상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데 대해서 누구 하나가 애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그 발언 취소시키세요.)

○金憲中議員 저는 절대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로신문은 그나마 우리가 인정하는 신문이라면 종로저널은 주지 말고 종로신문을 주자, 하나라도 주자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저는 수궁이 잡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議員들이 편견을 한다 이렇게 될까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올시다. 여러분들 각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은 경우 과연 이런 신문을 또한 계속해서 줘야 되겠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원들 허위보도 하나 제가 얘기하죠. 의원들

이 투표도 안 했는데 모의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의원을 최고 의원으로 선출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까지 낸 그것이 허위보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투표를 해 갖고 우수 의원 투표를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다듬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각자 각자 반성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발언할 기회 좀 주십시오.)

○議長 李斗鶴 玄孝善議員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玄孝善議員 玄孝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의委員長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委員長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을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심의위원회가 무슨 장난하는 데입니까? 기분 내키면 돌려주고 기분 나쁘면 깎아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놓고 예결위원회에서 도로 살려주고 이런 일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기분가지고 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신문구독료라고 했지 서울신문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서울신문인지 아닌지를 알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교묘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李憲九議員 議席에서 - 지금 질의인지 토론인지 알 수가 없어요.)

○玄孝善議員 뭐가요?

(○李憲九議員 議席에서 -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질의성 발언을 .....)

○玄孝善議員 토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토론을 하려면 똑바로 해서 토론하고 끝내버리세요.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玄孝善議員 議員들이 말이죠. 개인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그것이 무슨 개인 감정입니까? 정식으로 합시다. 토

론을 하려면 토론으로 나가세요.)

○議長 李斗鶴 조용히 하세요. 玄孝善議員님! 말씀하세요.

○玄孝善議員 議員들이 말이죠. 자기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자유당 때부터 서울신문을 계속 단독으로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입니까?委員長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예 현찰이 안 되면 서울신문 구독료도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몽땅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金憲中議員! 말이죠. 개인감정 세워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議長 李斗鶴 개인감정에 운운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그런 발언은 모두 의원들의 품위에 입각해서 삼가하세요. 金成贊議員! 절대적으로 이것은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니까 토론에 입각해서 지나친 언동은 삼가해 주세요.

○金成贊議員 미안합니다. 자주 나와서 우리 金憲中議員님이 여기가 개인의 어떤 좌판장이나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당신 지금 인신공격하려고 나왔어? 당신이 지금 최고 의원이요? 최고 의원이요?)

○金成贊議員 오늘 이 자리가 예결산 승인하는 회의장입니다. 이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결산 승인하는 본회의장인데 개인의 감정을 노출시켜 가지고 몇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여기 와서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金成贊議員이 최고 우수 의원이요?)

○金成贊議員 회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이 자리가 이성을 찾으세요.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당신이 몇 번이나 나와)

○金成贊議員 이성을 찾아요. 본인의 이성을 찾으라고. 오늘 이 자리가 본회의장인데.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그런데)

○金成贊議員 예산심의하는 22명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당에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토론을 하란  
말이요. 토론)

○金成贊議員 개인적인 자기 집에 가서 할  
얘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어서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지 당신이 지금 최고의원이  
요? 왜 그런 질문을 내게 해?)

(장내소란)

○議長 李斗鶴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  
會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續開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가지 건설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玄孝善議員님과 田永泰議  
員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내용에 대해서는議長으로서 재차 정회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동의요청을 한 당사  
자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간지 구독  
료 전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양해를 하고  
지방지 육성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줘  
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 잘  
아시겠지요?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분 거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개의 발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개의발언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어요.  
제가.)

○議長 李斗鶴 예. 말씀하십시오.

○金憲中議員 또 개의 발언을 하면 시끄럽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를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하는 충정심에서 한 말씀드리겠  
어요.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밀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 말씀드  
립니다.

○議長 李斗鶴 그러면 개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개의가 없으므로 지금 동의발의 안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잘 모르십  
니까? 동의 발의는 지방지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자체를 부활 여부를 부활토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상  
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  
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두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는데 표  
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수  
와 기립과 비밀투표 이 세 가지 방법 중  
에 한 가지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말씀하십시오.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시간도 바쁘  
고 한데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찬반  
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거수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朴鍾植議員!

○朴鍾植議員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로 하겠습  
니다.

(○金憲中議員 議席에서 -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議長 李斗鶴 비밀투표가 金憲中議員, 朴鍾  
植議員 두 분이 제의되었는데 거기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의 의원 중 13명 의원의 비밀투표  
찬성으로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되는 대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무기  
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孫  
光一議員과 金成贊議員을 지명하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서 직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에 검인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係長으로부터 투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事係長 金時晩 議事係長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議長님 석을 향하여 맨 앞줄의 좌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존칭을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하는 이 많음)

○議長 李斗鶴 지금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지육성보조금은 차후에 책정하기로 하고 금번은 완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이 원안이고 지금 현재 동의안 발의는 얼마나마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몇푼이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동의 발의된 것이니까 지금 투표는 동의발의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동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부란에 가를 그 다음에 원안대로 원하시는 분은 부를 적으시고 이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議事係長 金時晩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時00分 投票開始)

(議事係長: 議員姓名 呼名)

○議長 李斗鶴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2時05分 投票終了)

(名牌函 및 投票函 閉函)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같이 2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7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서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이의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동료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치료 중에 있던 우리 鄭鍾九議員께서 기계를 몸에 차면서 '95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우리 동료 의원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쾌유하기를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되 우리는 어디까지나 열의에 너무 북받쳐서 너무 과격한 마음자세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깨끗이 한강물과 더불어 씻어내고 어디까지나 참다운 동지애를 더 고양케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散會)

○出席議員 20名

李斗鶴 李憲九 千相旭

|       |       |       |        |        |        |        |        |        |
|-------|-------|-------|--------|--------|--------|--------|--------|--------|
| 得述植先一 | 載炯鍾勸光 | 沈李朴朴孫 | 善九熙信泰中 | 孝鍾昌禹永憲 | 玄鄭丁朴田金 | 漢魯岩浩龍贊 | 壽萬在相臥成 | 玄李羅芮林金 |
|-------|-------|-------|--------|--------|--------|--------|--------|--------|